

# 2025년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「2025년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7일

대구광역시장

(재)대구테크노파크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추진목적

- 지역의 우수한 조달물품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

### 사업내용

-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기술·품질·시험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지원
-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

## 2. 지원대상 및 내용

### 지원대상

-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,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

## ■ 지원기간

- 사업 공고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## ■ 지원분야

- 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 가능

### ①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

-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
-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
- 기업당 최대 12,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
  - 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

### ② 인증 지원

-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
  - 기술인증 : 신제품인증(NEP), 신기술인증(NET)
  - 품질인증 : 성능인증(EPC), 우수재활용(GR), 환경표지(환경마크), K마크, 우수품질 소프트웨어(GS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품질보증조달물품, 소재·부품 신뢰성 인증, ICT 융합품질인증 등
  - 시험인증 :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
- 기업당 최대 4,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
  - 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

### ③ 지식재산권 지원

-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
  -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
  -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
- 기업당 최대 2,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
  - 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

### 3. 지원제외 대상 및 안내사항

#### 지원제외 대상(접수마감일 기준)

-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
- 기업이 부도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
## 유의사항

-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은 대구테크노파크가 별도 선정한 수행기관 Pool에서 매칭 후 과업 수행 (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은 수행기관 제한 없음)
-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된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을 취소함
- 사업 선정 이후 중도 포기 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

## 우대사항

- (중소기업벤처부)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」으로 결정된 밀집 지역 소재 기업(2점) → 추가 자료 제출 불필요 (사업자등록지 기준으로 확인 후 가점 부여)

## 우수조달물품 제도 안내

### ○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?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·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·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‘우수제품’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

### ○ 우수제품의 지정기간?

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, 납품실적, 수의계약 가능 여부,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 가능(연장조건 중복 불가)

### ○ 우수제품 판로지원?

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, 전시회개최, 카탈로그 발간,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,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·배포 등의 홍보 지원

### ○ 우수제품 제도 안내(조달청 홈페이지 참고)

<https://www.pps.go.kr/kor/content.do?key=00297>

## 4. 추진일정


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5. 신청방법

### 공고 및 접수

○ 공고기간 : 2025. 3. 17(월) ~ 4. 17(목)

○ 접수기간 : 2025. 4. 14(월) ~ 4. 17(목)

※ 신청마감일 (2025. 4. 17(목), 17:00)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

### 제출서류

구분	제출자료명	비고	
1	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필수	붙임1
2	적정성 확인서	필수	붙임2
3	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	필수	붙임3
4	사업자등록증	필수	
5	중소기업확인서	필수	
6	2023, 2024 표준재무제표증명 ▶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,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	필수	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	필수	
8	공장등록증명(공고일 이후 발급)	해당시	
9	추가 제출 가능 인증서	해당시	

※ 1~9 서류 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(PDF), 신청서 한글파일(HWP) 모두 제출

##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-mail 접수
  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: [www.dgtp.or.kr](http://www.dgtp.or.kr)
  -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 : [www.hitp.org](http://www.hitp.org)
- E-mail 접수처 : [make@dgtp.or.kr](mailto:make@dgtp.or.kr)

## 문의처

- 조근우 선임연구원( ☎ 053-757-3709 / ✉ [make@dgtp.or.kr](mailto:make@dgtp.or.kr) )